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[중재조정]

□ 민원 제목 : ○○○동 ○○○○○ 도면 열람 요청

□ 신청 취지

- 건설사, 구청 및 입주예정자 간 사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정보공개 청구 절차 없이 도면열람을 할 수 있다는 구청의 약속 사항 미이행에 따른 사업승인도면 열람 요구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도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야 도면 열람 가능

□ 사실관계

- 모델하우스에서 가졌던 건설사, 구청 및 입주예정자 간 사전회의 자리에서 도면 열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절차없이 사전에 연락을 하고 방문하면 언제든지 가능함을 약속한 상황
- 도면 열람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사전 전화하여 세대엘리베이터 홀 열람하고자 한다고 하였지만, 담당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면서 열람거부

□ 관계 법령 등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

□ 판단 및 결론

-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도면대로 해당 아파트 시공이 되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면열람을 원하며, 행정청에서도 도면열람에 대해

부분공개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, 특별히 비공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마땅히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- 사전 회의에서 도면열람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지만, 신뢰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비공개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정보공개법)제9조 제1항 제7호 “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“법인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.”를 살펴보면 나항(위법·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)의 해석을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됨
- 해당부서 조치결과
 -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입장에서 해당부서 방문시 도면 열람 처리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[중재조정]

□ 민원 제목 : 공사구간 도보권 확보 요청

□ 신청 취지

- 청량리 제○구역 공사구간은 등하교 시간에는 특히 차가 많이 다니고,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의 이동이 많음
- 공사구간이 양방향통행으로 되어 있어 뒤섞인 차를 피해 사람이 다녀야하는 위험한 상황임
-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청량리 제○구역 재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안전 및 불편사항이 있으며, 현장관계자와 현장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해결 예정

□ 사실관계

- 청량리 제○구역 공사로 인하여 어린이, 노약자 등이 보행하는 데 위험하고, 특히 다수의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도로로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

□ 판단 및 결론

- 우리구는 개발로 인하여 공사구역이 늘어난 상황으로 공사구역의 어린이, 노약자 안전을 우선시해야함
- 특히 이 구간에는 등하교하는 다수의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도로임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등하교시간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
- 등하교시간 차량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요청
- 해당부서 조치결과
 - 공사 착공 후 보·차도가 분리된 8m 도로를 설치하여 보행권 확보, 공사 시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